

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0. 16

(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현행 조례에 마을 이장이 질병 또는 타 지역으로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이장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읍.면장에게 보고하고, 그 직무 대행자를 지정 받도록 되어 있는데
- “장기간”이란 용어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읍.면장에게 “보고하고”의 내용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읍면장에게 전달하는 의사표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3조 제3항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이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“장기간”을 “20일이상”으로 개정
- 이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장이 읍.면장에게 전달하는 의사표시를 “보고”에서 “통보”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이장이 질병또는 타지역 장기출타등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코자하는 개정안으로,
- 조례의 내용중 “장기간”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읍면장에게 “보고”하고 대행자를 지정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의 장기간을 “20일 이상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“보고”란 용어가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“통보”로 개정코자함.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②항 및 화순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임명 받은자가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보고가 아닌 통보로 전달 하여야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,
- 특히, 동 조례 제3조 ②항에 의하면 이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용어 하나의 개정보다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구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중 “장기간”을 “20일 이상”으로 하고, “보고”를 “통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복무) ①~②(생략)</p> <p>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·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복무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20일 이상 ----- ----- 동보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